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4. 21.

복지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
- 발 의 자: 김화덕 의원 외 6인(박정환, 이성순, 홍복조, 서민우, 안대국, 윤권근)
- 발의일자: 2021. 2. 22.
- 회부일자: 2021. 2. 25.
- 상정 및 의결: 제2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(2021. 4. 21.)

## 2. 제정이유

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가발구입비 지원(안 제3조)
- 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지원신청, 지원제한(안 제4조~안 제7조)
- 라. 환수조치(안 제8조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
- 비용추계: 대상
- 입법예고(2021. 2. 22. ~ 2021. 3. 5.)결과: 의견 없음

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최근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암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상응하여 동 암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탈모 증상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 이들은 육체적 고통에 더해 제2의 정신적 고통도 심하게 겪고 있는 실정임.
- 조례안은 탈모 증상을 겪는 이들 암환자들에게 최소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아가 치료 의지를 북돋우려는 취지에서 구 예산으로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.
- 조례 제정 취지 및 이를 반영한 조문별 세부 규정 내용을 살펴볼 때, 특별히 논란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 다만 집행부는 조례 시행 과정에서 암환자 발생 추이 및 이와 연관되어 예견되는 가발 수요 등에 대한 합리적 관리를 통해 구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됨.

## 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## 7. 심사결과: 수정가결

## 8. 첨부서류: 위원회 수정안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부칙 “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를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로 한다.

### <수정안 조문 대비표>

조례안	수정안
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	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